

법무매거진

판사 임용 최소 경력 늦추려는 법안 논의, 법조일원화 무력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가 3개월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판사 임용 최소 경력 단축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경력 기준 상향 요건을 향후 5년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직역 간 벽을

허물고 다양한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해 폐쇄적인 사법부의 순혈주의와 특권 의식을 없애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신입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10년이 됐다. 2013년부터 3년 → 5년(2018년) → 7년(2022년) → 10년(2026년)으로 최소 경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최소경력을 5년으로 묶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지난 8월31일 부결됐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오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이 판사로 지원하지 않아 법관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며 “경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날부터 논의에 들어간 새로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최소 7년 경력이 필요한 시기를 현행 2022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시기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유예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변 등은 ‘별다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재론하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수급 부족에 따라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란 법원행정처 측 입장에 대해선 “핑계에 불과하다.”며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체 신규 법관의 과반을 5년 경력자로 충원했고, 올해도 신규 법관 157명 중 (5

년 경력자가) 무려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변호사 경험이 많지 않은 5년 경력자 위주로 법관이 충원돼 법조일원화 취지와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변 등은 “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신규법관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고, 판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경력요구 의무조항을 기존 일정에 따라 이행하면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판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 상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향신문)